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
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80
----------	-----

2021. 7. 20.(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숙애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6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7월 14일

-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숙애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아동, 치매환자, 장애인 등의 실종 발생 예방과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“아동등”및“실종아동등”용어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-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·홍보 사업 실시(안 제4조)
-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사업(안 제5조)
- 지자체, 경찰 및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·운영(안 제7조)
-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공적자 포상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주희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매년 아동, 장애인 등의 실종 발생에 따라 가정 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됨에 따라 아동등의 실종 예방과 실종아동 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「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2005년 12월 제정·시행됨.
- 실종아동, 치매환자, 장애인 등은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고, 실종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조기 발견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, 실종자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음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(목적) 및 제2조(정의)
 - 도내에서 발생하는 아동, 치매환자, 장애인(지적, 자폐, 정신) 등의 실종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·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 이에 필요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- 본 조례안에서 정의는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아동등” 및 “실종아동등”에 대해 정의하여,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
 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
 - 다.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
2. “실종아동등”이란 약취(略取)·유인(誘引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(離脫)된 아동등을 말한다.

○ 안 제4조(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)

-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에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,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정하고 있음.
- 또한, 이날 및 주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적합한 행사·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 1조의2에는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·방법 및 발생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안 제4조에서는 충북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5조(지원 사업) 및 제6조(예산 지원)

- 실종아동등 지원업무는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국가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으며,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 의해 주관되며,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·조정함.

- 또한 신고체계 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는 시·군이 담당하고 있어, 광역도의 업무는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수행이 요구됨.
- 이에 도는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를 포함한 관련 기관·단체 및 도민 대상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, 교육, 홍보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(이를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필요 비용 지원)하고,
- 소방본부 등에서 운용 중인 무인항공기(드론) 등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및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(위치 추적 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)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7조(협력체계 구축) 및 제8조(포상)

-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도내 시·군을 포함한 주변 지방자치단체, 경찰청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.
- 또한, 포상규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선행을 기리고 도민의 관심 제고하기 위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인 실종아동, 치매환자, 장애인 등은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중심으로 규정하고
- 또한 실종 발생을 사전예방하며, 실종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조기 발견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, 실종자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우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 할 것이며 입법적 차원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」

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

(이숙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8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6월 30일
발 의 자 : 이숙애, 박형용, 이상욱
이의영, 장선배, 허창원
윤남진

1. 제안이유

- 아동, 치매환자, 장애인 등의 실종 발생 예방과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아동등” 및 “실종아동등” 용어에 대한 정의 (안 제2조)
- 나.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·홍보사업 실시 (안 제4조)
- 다.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(안 제5조)
- 라. 지자체, 경찰 및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·운영 (안 제7조)
- 마.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공적자 포상 (안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-77호
- 다. 협의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
- 라.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등”이란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.
2. “실종아동등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)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사업)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
2.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
3.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
4.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
5.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비용 지원)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, 충청북도경찰청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
 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
 - 다.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
2. “실종아동등”이란 약취(略取)·유인(誘引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(離脫)된 아동등을 말한다.

제3조의2(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) 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,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·교육 및 홍보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신고의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(이하 “경찰신고체계”라 한다)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
1.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
2. 「아동복지법」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
3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

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
5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
6.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·감독하는 사람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-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
-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또는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추진

3. 관련조문

- 안 제5조(지원 사업)
- 안 제6조(비용 지원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사업 수행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(안 제6조)은 지원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므로 미반영
-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

(단위:천원)

구 분	합 계	산출기초	비고
계	8,310		
홍보비	7,4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리플릿 400원×4,000개 = 1,600 · 포스터 4천원× 200개 = 800 · 홍보물품 5천원×1,000개 = 5,000 	
강사비	9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강사비 300천원×1시간×13회 = 3,900 · 여 비 70천원×13회 = 3,300 	

나. 추계 결과 :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44,114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 입		0	0	0	0	0	0
국비		0	0	0	0	0	0
도비		0	0	0	0	0	0
세 출		8,310	8,559	8,815	9,079	9,351	44,114
홍보비, 강사비		8,310	8,559	8,815	9,079	9,351	44,114
지원비용		0	0	0	0	0	0
재원 조달		8,310	8,559	8,815	9,079	9,351	44,114
의존 재원	소 계	0	0	0	0	0	0
	보조금	0	0	0	0	0	0
	지방교부세	0	0	0	0	0	0
자체 수입	소 계	0	0	0	0	0	0
	지방세	8,310	8,559	8,815	9,079	9,351	44,114
	세외수입	0	0	0	0	0	0